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5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315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무처리 위탁 규정 신설(안 제79조의3)	3

I.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315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4. 8. 26.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수급인·하수급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건설공사 관련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기관 운영위탁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사무국을 직접운영하여 분쟁 조정 처리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무기능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건설분쟁을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던 것을 국토안전관리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국운영에 관한 현행 조문을 삭제함(안 제69조제4항).

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위탁여부를 확정하여 규정하고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 신설).

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무처리 위탁 규정 신설(안 제79조의3)

– 3 –

현행	개정안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 ----- -----

개정안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¹⁾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2013.8.6.>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국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무국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²⁾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소송이나 중재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하게 되면 그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분쟁 당사자의 피해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하계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기구임.

< 건설분쟁 해결 제도 비교표 >

구분	소송	중재	조정
관련 기관	법원	합의에 따라 지정한 법원, 대한상사중재원 등	<u>건설분쟁조정위원회</u>
근거 법률	민사소송법	중재법	<u>건설산업기본법</u>
강제력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법적구속력(○)	중재판정 전 당사자 간 중재합의로 진행 (중재판정 법적구속력 ○)	<u>당사자 합의 시</u> <u>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u> <u>(조정합의 시에만 구속력 ○)</u>
비용·시간 소요	多	中	少

※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공사비 미지급, 보증 책임 등과 같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위원회를 직접 운영함에 따른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임.

최근 3년간 건설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24건, 2021년 22건에서 2023년 3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1건당 처리 기간의 경우에도 2019년 129일에서 2020년 702일로 급격히 증가한 바가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548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의 목적인 건설분쟁 조정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연도별 신청 건수 및 평균 처리 소요일 >

구분	전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정신청 건수	169건	24건	47건	22건	24건	32건
평균 소요일(일)	485일	129일	702일	45일	236일	548일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개정안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려는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 성격이 유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³⁾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게 되면,

3)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건설과 관련한 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이를 통한 건설분쟁조정 당사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②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③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주로 건설 시공과 관련한 안전 평가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사항은 시공상의 책임, 하도급 분쟁 및 도급 계약의 보증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 주로 계약 관계에서의 대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임을 고려해 볼 때,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대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사항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을 선행적으로 갖추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제7호 및 제8호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91

4)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